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316 회 정례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5. 11.

정 순 옥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정순옥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데 근거합니다. 이에 따라 달서구는 기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 기능을 겸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2조제2항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개정 주요 내용을 2025년 11월 14일부터 2025년 11월 26일 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달서구 여건에 맞는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순옥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5113
----------	----------

발의연월일: 2025. 11. 14.

발 의 자: 정순옥 김정희 장호섭
남현주 박정환 강한곤
황국주 김해철 박왕규

1. 제안이유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명시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 달서구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겸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아동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2항)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비용추계서: 비대상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u>법 제12조제1항에서 정의한 사항</u>을 심의한다.</p>	<p>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는 <u>음 각 호의 사항</u>을 심의한다.</p> <p>1. <u>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u></p> <p>2. 「<u>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u>」 제10조제1항에 따른 <u>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u></p>

【 관계 법령 】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 4의2.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시·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군·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